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신종 MMF(S-26 호)

2. 주요 변경내용

-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8 월 1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책임 : 허승찬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책임 : 허승찬 부책임 : 김동명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8 월 12 일 - 부책임운용인력 추가(김동명)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 책임 : 허승찬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책임 : 허승찬 부책임 : 김동명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에 관한 사항	비용 (생략)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전 1]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후 1]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경 전 1]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경우)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변경 후 1]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단,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신종 MMF(S-27 호)

2. 주요 변경내용

-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8 월 1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생략) 책임 : 허승찬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책임 : 허승찬 부책임 : 김동명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8 월 12 일 - 부책임운용인력 추가(김동명)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 책임 : 허승찬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책임 : 허승찬 부책임 : 김동명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클래스원신종 MMF(S-36 호)

2. 주요 변경내용

-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8 월 1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책임 : 허승찬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책임 : 허승찬 부책임 : 김동명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8 월 12 일 - 부책임운용인력 추가(김동명)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 책임 : 허승찬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책임 : 허승찬 부책임 : 김동명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8 월 1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책임 : 구경서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8 월 12 일 - 부책임운용인력 추가(신정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 책임 : 구경서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8 월 1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책임 : 구경서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8 월 12 일 - 부책임운용인력 추가(신정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 책임 : 구경서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중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8 월 1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책임 : 구경서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8 월 12 일 - 부책임운용인력 추가(신정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 책임 : 구경서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인 Best 신종 MMF(K-1 호)[국공채]

2. 주요 변경내용

-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8 월 1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책임 : 허승찬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책임 : 허승찬 부책임 : 김동명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8 월 12 일 - 부책임운용인력 추가(김동명)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 책임 : 허승찬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책임 : 허승찬 부책임 : 김동명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채권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8 월 1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8 월 12 일 - 채권 부책임운용인력 삭제(신정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에 관한 사항	비용 (생략)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파워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채권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8 월 1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생략)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8 월 12 일 - 채권 부책임운용인력 추가(신정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퇴직연금블루칩바스켓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채권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8 월 1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생략)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8 월 12 일 - 채권 부책임운용인력 추가(신정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가치성장 3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채권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8 월 1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8 월 12 일 - 채권 부책임운용인력 추가(신정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에 관한 사항	비용 (생략)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가족사랑짱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K-1 호)[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채권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8 월 1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8 월 12 일 - 채권 부책임운용인력 추가(신정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채권운용] 책임 : 구경서 부책임 : 신정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에 관한 사항	비용 (생략)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글로벌 4 차산업 1 등주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C 클래스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오기 정정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8 월 1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요약정보]</td><td>
투자비용
(생략)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5">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th></tr>
<tr><th>1 년</th><th>2 년</th><th>3 년</th><th>5 년</th><th>10 년</th></tr>
<tr><td>C1</td><td>209</td><td>408</td><td>593</td><td>845</td><td>1,315</td></tr>
</table>

운용전문인력
(생략)
</td><td>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5">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th></tr>
<tr><th>1 년</th><th>2 년</th><th>3 년</th><th>5 년</th><th>10 년</th></tr>
<tr><td>C1</td><td>209</td><td>408</td><td>593</td><td>943</td><td>1,984</td></tr>
</table>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td></tr>
</table>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8 월 12 일 - C 클래스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오기 정정

<table>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5">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th></tr>
<tr><th>1 년</th><th>2 년</th><th>3 년</th><th>5 년</th><th>10 년</th></tr>
<tr><td>C1</td><td>209</td><td>408</td><td>593</td><td>845</td><td>1,315</td></tr>
</table></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5">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th></tr>
<tr><th>1 년</th><th>2 년</th><th>3 년</th><th>5 년</th><th>10 년</th></tr>
<tr><td>C1</td><td>209</td><td>408</td><td>593</td><td>943</td><td>1,984</td></tr>
</table></td></tr>
<tr><td>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td>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td>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tr>
</table>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올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모투자신탁의 하위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추가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8 월 12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8 월 12 일 - 모투자신탁의 하위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추가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등]**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등]**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추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SICAV - All China (USD) 펀드는 스윙 싱글 프라이싱 (Swing Single Pricing)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스윙 싱글 프라이싱(SSP) 제도란 해당 펀드에 추가 자금 유입과 자금의 유출이 있을 경우 이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해당 자금 유입 및 유출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가 산출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매입 또는 환매할 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보수 및 비용 예시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때 부과되는 거래 비용은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2%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전 1]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후 1]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경 전 1]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최대 400 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의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천재지변/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2, C-P2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 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1]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단,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2, C-P2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 년 12 월 31 일까지「소득세법」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